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217호

「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2월 20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」

일부개정고시 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일부 항목에 대한 추적관리 기준을 도입하고, 검사 부적합자에 대한 재검사 기준을 강화하며 검사항목 중 혈압, 혈당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한편,

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의원, 병원 및 종합병원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공동 이용 대상기관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

「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, 해당 기관이 의료적성검사 결과 등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려는 것임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교통서비스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정안	수정안	의견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
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
- 전자우편 : mirthbdh@korea.kr
- 팩 스 : 044-201-3813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
『정책자료/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
교통서비스정책과(전화 044-201-381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